

공정안전보고서

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!!



공정안전 보고서 제도

법으로 정한 유해·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 부터의 유해·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·폭발 등으로 인한 '중대산업사고'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도록 한 법정 제도임

■ 관련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)

제출대상

▶ 다음 7개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)에 해당되는 사업장

- ① 원유 정제처리업(19210)
-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(19229)
-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(20111)
- ④ 질소,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(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(20201)
- ⑤ 복합비료 제조업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)(20202)
- ⑥ 농약 제조업(원제 제조만 해당)(20412)
- ⑦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(20494)

▶ 다음의 유해·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사업장

유해·위험물질 명	규정수량(kg)
인화성 가스	5,000(저장:200,000)
인화성 액체	5,000(저장:200,000)
메틸아소시아네이트	150
포스겐	750
아크릴로니트릴	20,000
암모니아	200,000
염소	20,000

유해·위험물질 명	규정수량(kg)
이산화황	250,000
삼산화황	75,000
이황화탄소	5,000
시아나화수소	1,000
불화수소	1,000
염화수소	20,000
황화수소	1,000

유해·위험물질 명	규정수량(kg)
질산암모늄	500,000
니트로글리세린	10,000
트리니트로플루엔	50,000
수소	50,000
산화에틸렌	10,000
포스핀	50
실란	50
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참조

작성 및 제출 방법

▶ 제출대상
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

▶ 작성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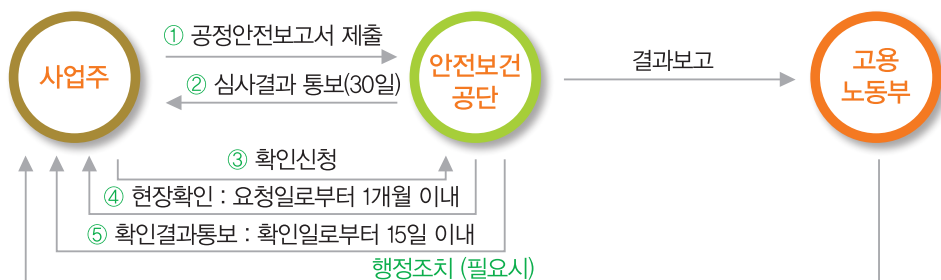
작성자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소지하고 안전보건 공단교육(28시간)을 이수한 자

작성 내용 공정안전자료, 공정위험성 평가, 안전운전 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

▶ 제출방법

소정의 신청양식(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11호 별지 제1호 서식)과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안전보건공단(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)에 제출

심사 및 확인 흐름도



공정안전보고서 Q&A

Q 5인 미만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?

A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(적용범위 등)의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따라서 기존에 보유중인 설비가 대상이 된 사업장은 2014년 1월 1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 우리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임을 확인하는 방법은?

A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라 분류되며,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Q 여러 개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·저장할 때 규정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A 여러 개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·저장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R값을 계산하고 R값이 1 이상이면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규정량 계산
예시 1

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하루 최대 2톤을 취급하고 인화성 가스인 도시가스를 3톤 취급할 경우

$$R = \frac{2\text{톤(톨루엔 취급량)}}{5\text{톤[인화성액체(취급)규정량]}} + \frac{3\text{톤(도시가스 취급량)}}{5\text{톤[인화성가스(취급)규정량]}} = 1 \geq 1 \text{ (대상)}$$

규정량 계산
예시 2

톨루엔을 하루 최대 2톤을 취급하고 자일렌을 100톤 저장할 경우

$$R = \frac{2\text{톤(톨루엔 취급량)}}{5\text{톤[인화성액체(취급)규정량]}} + \frac{100\text{톤(자일렌 취급량)}}{200\text{톤[인화성액체(저장)규정량]}} = 0.9 < 1 \text{ (비대상)}$$

Q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은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합니까?

A 업종으로 PSM 대상이 된 경우는 모든 설비에 대해 작성하여야 하며, 규정수량으로 PSM대상이 된 경우는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.

Q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할 곳은 어디입니까?

A 아래의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제출기관	전화번호	관할구역
수도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	031-364-7510~6	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
동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	052-282-9201~3	부산, 울산, 경남
대경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	054-476-6977~80	대구, 경북
호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	061-681-7254~6	광주, 전남, 전북, 제주
충청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	041-357-9635~8	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

※ 관련자료는 '공단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→ 사업안내/신청 → 중대산업사고예방 →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→ 자료실'에서 다운받아 활용가능